

노.사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보 건	안 전	소 장
				방역팀	김기남 박철수	
일 시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회의시간	13:30~15:00	회의장소	회의실
참석인원	계	16 명	사용자	8 명	근로자	8 명
전 회 협 의 체 미 결 사 항						
1. 전회미결사항없음.						
순 번	협 의 내 용					
1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5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사항					
7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관한사항					
8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사항					
9	- 전 공정 위험성평가 및 수시 위험성평가등에 관한 사항					
10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12	- 작업의 시작시간,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13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14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공통사항	1. 노.사협의체회의 / 위험성평가[06월24일(화)13:30~15:00]					
기타 건의사항	1.지정병원:강릉동인병원(033-650-6105) 2.배치전/특수건강검진:예수강릉메디컬의원 직업환경의학과(033-655-9225) 3.TBM시간 조정					

참 석 자 명 단(노사협의체)

현장명 : 강릉 견소동 모아미래도 아파트 신축공사

2025년 6월 24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업 체 명	성 명	확 인	업 체 명	성 명	확 인
(주)미래도건설	김영호	김영호	(주)미래도건설	김영호	김영호
(주)미래도건설	임진영	임진영	(주)미래도건설	김영호	김영호
옥삼건설(주)	이광주	이광주	옥삼건설(주)	이광주	이광주
비경건설(주)	유영학	유영학	비경건설(주)	유영학	유영학
씨엔지건설(주)	김학수	김학수	씨엔지건설(주)	이성준	이성준
(주)리도건설	이영호	이영호	(주)리도건설	김종민	김종민
(주)나노ENG	이근호	이근호	(주)나노ENG	김원천	김원천
(합)현대소방 시설공사	김영호	김영호	(합)현대소방 시설공사	김영호	김영호
간 사	박철근	박철근			
	강우성	강우성			
	방미림	방미림			

회의 안건 심의 및 진행 사항

심의. 의결 안건	토의결과
1. 안전교육등 전달사항	1. 현장통2.0전파(토공사외 모두 설치 및 활용)
* 온열질환 대비하여 근로자 휴게실 1개 더 추가설치 할 예정	2. 온열질환 관리 철저
	- 102동 간이 휴게실 및 코끼리 에어컨 추가설치 완료
	- 105동 B2F 근로자 쉼터 설치, 낚시 의자 16개 배치
	- 106동 컨테이너 휴게실 및 코끼리 에어컨 추가설치
	- 제빙기 위치 및 휴게실 위치 근로자 전파
	1) 제빙기 위치 : 근로자게이트 옆
	2) 휴게실 위치 : 현장 안전교육장 2층 (★냉동고물비치★)
	※ 아침 6시 에어컨 ON , 저녁 6시 에어컨 OFF
	관리자외에 임의로 끄지 말 것.
	- 에어컨 관리하면서 다른 사무실들도 컨테이너 화재점검표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온열질환 3대예방수칙 -> 5대예방수칙으로 변경
	- 산안비 한시적으로 위험성평가 거쳐 15%이내 사용가능
	- 7월초 혹서기 관련 비상대피훈련 실시예정
	- 온열질환 민감군 수시관리 및 TBM시 건강상태 확인 必
	- 온열질환 관련 안전보건표지 부착 필요 (응급처치 등)
	3. 흡연구역 설치
	1) 102동 간이 휴게실 옆
	2) 104동 지하2층
	3) 105동 PC구간 지하 1층
	4) 106동 컨테이너 휴게실 옆
	5) 110~111동 사이 지상 1층
	4. 협력사별 사다리 점검 및 갯수파악예정
2. 전월 노사협의체 Feed Back	1.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폭염단계 주의단계 2일이상
	예상될시 아이스크림 및 음료수 지급이벤트를 산안비적용
	가능하도록 함

3. 심의 및 의결결과	1.여름철 온열질환 대비 관련품목 산안비적용
	※산안비 총액 15%내에서만 가능
	- 생수통 뿐만 아니라 정수기통도 산안비 가능
	EX) 워터걸, 워터보이, 아스크럼데이, 수박데이 등
	- 찬성 (16) 명, 반대 (0) 명
4. 근로자 의견	- 휴게실에서 흡연,비흡연 구역 설정하여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위험 없도록 관리바람. 휴게소 안 공도구 비치 금지.
	- 102동 휴게소 전기연결 설치 재정비 필요.

사 진 대 장



일자	2025 년 6 월 24 일	장소	안전교육장
내 용	6월 노사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일자	2025 년 6 월 24 일	장소	안전교육장
내 용	6월 노사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흑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

1. 관련근거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흑서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알림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금년도 2월에 흑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흑서기 사용가능 품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사용가능품목	비고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사용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 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3. 각 지방관서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모임 등을 활용하여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기탈출 안전보건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5대 기본수칙 준수



위기탈출 안전보건앱
체감온도 계산기

5대 기본수칙 준수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작업중지

-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2025-산업보건실-24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요령 주지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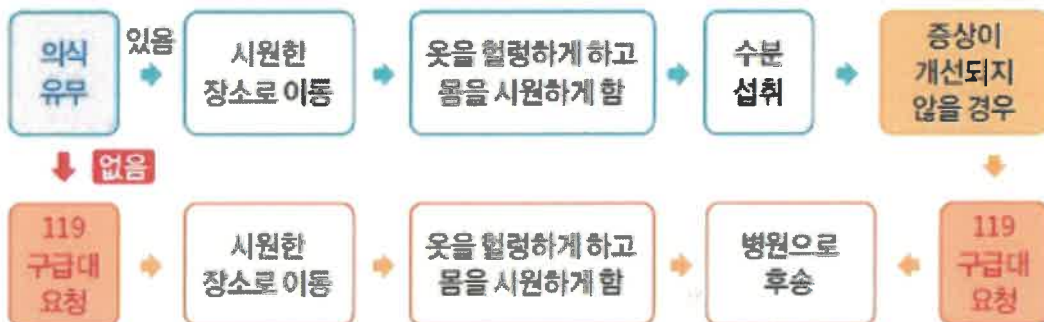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 온열질환 증상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조치 요령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서 부채나 선풍기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종류	온열질환 증상	응급조치 요령
열사병	- 고열(>40℃) -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 의식을 잃을 수 있음 (중추신경 이상) ※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지체 없이 119 신고 -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힘 -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 (대퇴부 밑, 가랑이 관절부)에 대어 체온을 낮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열탈진	- 땀을 많이 흘림(≤40℃)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탈수 및 전해질 소실) - 창백함, 근육경련	- 열원으로부터 벗어난 장소로 이동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필요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 보충
열경련	-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작업 시 사용된 근육이 쭉시거나 아픔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근육부위 마사지 및 충분한 휴식 -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 ※ 1시간 넘게 경련 지속/기저질환이 심장질환인 경우 / 평상 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열실신	- 어지럼증 -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뇌허혈 상태)	-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힘 ※ 다리를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둠 -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함
열부종	- 손, 발이나 발목이 부음	-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힘 ※ 부종 발생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둠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포일시 : 2025년 6월 19일 17:00

중대재해
사이렌

업 종
기타업

재해 유형
중독



‘25년 6월 18일(수) 11:30경 인천 강화군 소재
분뇨처리시설 내에서 재해자가 수처리설비 가동을
위한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추정)에 의해 사망**



예방대책



-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 밀폐공간에서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합니다.

OPEN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포일시 : 2025년 6월 20일 17:00

중대재해
사이렌

업 종
건설업

재해 유형
떨어짐



‘25년 5월 29일(목) 08:2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하층 비계 해체 작업 중 **단부로 떨어져(5m)** 치료 중 사망



예방대책



- 단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 작업 여건상 안전난간 해체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체결 상태를 관리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포일시 : 2025년 6월 23일 17:00

중대재해
사이렌

업 종
제조업

재해 유형
맞음

‘25년 6월 20일(금) 10:30경 충남 당진시 소재 케이블 제조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작업대 운반 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떨어지는 작업대에 재해자가 맞아 사망**



예방대책



- 중량물 취급 시 충분한 강도의 달기구를 사용하고, 달기구의 상태 및 줄걸이 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 및 관리합니다.
-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작업 시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화물 하부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